

『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『건축법』 및 『건축법 시행령』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,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규정 완화.(안 제4조)
 - 도시형 생활주택은 심의대상을 완화(20세대 → 30세대 이상)하고, 설계변경 등 심의생략 가능한 경우를 법령에서 규정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.
 - 위원회 구성인원 변경(20인 이상 30인 이내 → 25명 이상 100명 이내)
-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적용완화.(안 제15조)
-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수시점검 실시근거 마련.(안 제26조의2)
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및 전용일반주거 지역내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이격기준 완화.(안 제37조)
- 공작물의 축조신고 제외대상 명시(안 제39조)
(저장시설 중 액비저장고 등 농·축·수산업의 관련시설을 제외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건축법」, 「건축법 시행령」
- 입법예고 : 2013. 3. 6 ~ 3. 26(20일간)(의견없음)
- 구미시 건축위원회 개최 의견 수렴(2013. 4.26)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.(2013. 5.22)

5. 검토의견

□ 본 '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 은,

- 『건축법』 및 『건축법시행령』의 개정에 따른 조례로,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,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,
-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구미시 건축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였음

□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,

-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규정 정비

- 30세대 이상 다세대주택, 연립주택, 도시형주택만 심의대상
- 위원회 구성 인원을 20인이상~30인 이내 → 25명이상~100명 이내
(※ 위촉위원 중 30%를 여성위원)
- 위원 임기 2년, 한차례 연임 가능
- 심의 위원 중 전문가 인원이 $\frac{1}{4}$ 이상 구성
- 심의 위원 명단 확정을 신청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 신설
- 건축주·설계자 및 심의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안건 설명가능

○ 공동주택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(건축법제56조)
(해당지역 용적률 +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= 기준용적률)

○ 다중이용시설등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,
시장이 수시 점검 요구 조항 신설(안제26조의2)

○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

구 분	종 전		개 정 안	
건축물의 높 이	4m이하	1m	-	“삭제”
	8m이하	2m	9m이하	1.5m
	8m초과	높이의 2분의1	9m초과	높이의 2분의1

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재해 발생 등 안전을 고려 맞벽건축
허용 제한

□ 검토결과,

○ 위와 같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, 완화하고
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안이 개정되어 있으므로, 원안대로 심의함이
 좋을 것으로 생각됨.